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1년 9월 9일 김영주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충북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정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3. 주요내용

- 근거법령의 추가
 - 문화관광부 및 「민법」 제32조 → 「민법」 제3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
- 제4조 신설
 - 정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설립당시 자산 종류 및 평가액, 자산의 관리 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사무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제3항의 수정

- 기금에 관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도록 명시함.

○ 제16조 시행규칙 및 부칙 제2조의 삭제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충북문화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경과조치에 관해서는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명시할 사항이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함.

4. 검토의견

주요내용으로는

- 충북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의 근거법령을 기존의 「민법」 제32조이던 것에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을 추가하고,
- 제4조를 신설하여,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명시하였음.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충북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의 근거법령을 기존의 「민법」 제32조이던 것에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을 추가함으로써 충북문화재단이 비영리법인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제4조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충북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기준을 분

명히 하고,

또한, 충북문화재단 기금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던 것을 정관에 따르도록 하여 충북문화재단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조문을 보강하였기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